6. 옥외광고물

6.1. 개요

옥외광고물의 정의

- 양평군의 옥외광고물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기간 계속해서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, 입간판, 현수막, 벽보, 전단 이와 유사한 광고물을 말함. (행정자치부 시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항 참조)

가이드라인 기본방향

- 옥외광고물은 양평군의 경관 형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서 옥외광고물의 기능적, 시각적, 경관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함.
- 옥외광고물의 유형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, 통일감 있는 가로경관 형성을 유도함.
- 이동을 하며 연속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옥외광고물의 시각적 이미지가 건축물 및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시퀀스적인 이미지를 고려하여 계획함.
-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과 건축물, 가로경관, 색채 등의 가이드라인을 연계시켜 구성함으로써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의 도입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계획함.
- 양평군의 옥외광고물 설치 현황을 고려하여 행정중심의 단속 강화보다는 시범사업, 표준디자인, 경관협정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주민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는 옥외광고물 정책을 도입함.

가이드라인 기본원칙

1 경관구성요소로서의 공공성을 강조한 옥외광고물

- 장식성 및 독창성 중심의 디자인을 탈피하여 건축물 및 자연, 가로공간과의 조화성을 고려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도입을 통해 옥외광고물의 공공성을 높임
- 가로 · 시가지경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두간판 및 지주간판의 표준디자인 도입 유도

2 연속성을 형성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

- 점포별로 옥외광고물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건축물 및 가로 단위에서 옥외광고물의 통일감이 형성될 수 있도록 계획
- 보행자 및 운전자의 시점에서 이동하며 경험하게 되는 연속성 있는 가로경관 형성

3 배경과의 조화성을 고려한 옥외광고물

- 옥외광고물의 배경이 되는 자연경관 및 건축물, 가로공간과 조화될 수 있도록 저채도 · 저명도의 색채계획을 수립하고 구조체의 부피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디자인 기본형 개발
- 건축물별 마감 특성 및 노후화 정도를 고려한 옥외광고물 설치기준 마련

4 장식성 보다는 기능성을 우선으로 하는 옥외광고물

- 정보전달 기능과 관계없는 과도한 장식적 디자인(형태, 색채, 재료, 조명 등)을 지양하고,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기능 중심의 가이드라인 수립
- 옥외광고물의 배경 패널 및 색채, 규격 등의 표준화를 통한 통일성 형성

6.2. 옥외광고물 유형

옥외광고물 유형

구분		유형별 이미지	정 의
가로형간판			• 문자 · 도형 등을 목재 · 아크릴 · 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건물의 벽면에 가로로 길게 부착하거나 벽면 등에 직접 도료(색상이 표시된 천, 종이 등)로 표시하는 옥외광고물 • 양평군의 가로형 간판은 건물명간판과 차양간판, 점두간판으로 구분하여 구성
돌출간판			• 문자, 도형 등을 목재 · 아크릴 · 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독립적으로 혹은 연속하여 건물의 벽면에 돌출형으로 부착하는 옥외광고물
지주이용간판	대형지주이용간판		• 지면에 지주를 따로 설치하여 문자, 도형, 사진 등을 판 위에 직접 표시하는 옥외광고물 • 고속도로나 국도변 등에 설치한 대형 광고판으로서 문자, 도형 등을 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한 옥외광고물 (야립간판)
	입간판		• 지면에 지주를 따로 설치하여 문자, 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 · 아크릴 · 금속재 등의 판을 지주에 부착한 옥외광고물 • 사각기둥, 원기둥 등의 게시시설을 따로 설치하여 문자, 도형 등을 기둥의 면에 직접 표시하는 옥외광고물
현수막			• 건물 등의 벽면, 지주, 현수막 전용게시시설 기타 시설물 등에 매달아 설치하는 광고물 • 천이나 종이 또는 비닐 등에 문자, 도형 등을 표시
창문이용광고물			• 천이나 종이 또는 비닐 등을 창문 또는 출입문에 직접 부착하거나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• 창문 또는 출입문에 직접 부착하는 표지물

〈표 5-12 양평군 옥외광고물 유형〉

6.3. 가로형 간판

정의

- 가로형 간판이란 문자 · 도형 등을 이용하여 목재 · 아크릴 · 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건물의 벽면에 가로로 길게 붙이거나 벽면 등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옥외광고물로 정의함. (행정자치부/ 2014.12.9/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)
- 양평군의 가로형 간판 가이드라인은 건물명간판(건물명칭 또는 대표 업체의 상호)과 차양간판(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상호), 점두간판(건물 내 점포별 상호)으로 구분하여 구성함.

건물명간판

가이드라인

- 건물명간판의 광고내용은 배경패널이 없는 입체문자 및 도형으로 설치하며, 설치하는 위치(건물 상단 또는 건물 주출입구 상단)에 따른 규격을 준수하여 설치함.
- 광고내용은 건물 명칭 또는 건물 대표사의 상호 및 심볼을 표시할 수 있으나, 실사이미지는 사용할 수 없음.
- 색채 및 서체는 자유롭게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, 조명 설치 시 간접조명 또는 조명형 입체문자(광원이 직접 보이지 않는 형식)로 설치함. 단, 깜빡임, 움직임, 색 변화가 있는 연출조명은 설치할 수 없음.
- 3층 이상의 상업 · 업무용 건축물은 건물별 건물상단과 주출입구 상단에 각각 1개 이하로 설치할 수 있음.
- 건물명간판을 건물 상단에 설치할 경우에는 최고층과 옥탑층 사이 벽면에 설치하고 광고물의 높이가 최대 1.2m를 넘지 않도록 설치함.

건물명 간판



지양 : 건물 명칭 외에 광고내용 설치



지양 : 인지성이 낮은 재료 사용



권장 : 조명형 입체문자 사용

차양간판

가이드라인

- 차양간판은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 등의 차양에 상호, 브랜드 로고, 심볼을 입체문자 또는 평면 그래픽 쉬트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.
- 별도의 배경 패널은 설치하지 않고 차양 측면을 이용하여 설치하되 광고면은 높이가 최대 1.2m를 넘지 않도록 설치함.
- 차양간판은 정유사별 매뉴얼에 따라 브랜드 · 로고 · 심볼을 표시할 수 있으나, 실사이미지는 사용할 수 없음. 색채 및 서체는 정유사별 CI 매뉴얼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광고내용을 제외한 별도의 장식구조물은 설치할 수 없음.
- 조명 설치 시 조명형 입체문자 또는 블랙아웃(Blacks Out)쉬트를 사용하여 주 광고내용에 한하여 적용이 가능함. 단, 깜빡임, 움직임, 색 변화가 있는 연출조명은 설치할 수 없음.
-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를 대상으로 점포별 차양 1개에 대해 4면 이하에 설치할 수 있음.
- 광고내용 및 구조물 등이 차양 밖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하며, 차양이 아닌 기타 건축구조물 등에는 설치할 수 없음.

점두간판

디자인 유형

- 점두간판의 디자인 유형은 배경패널의 형태에 따라 [일반 패널형], [조명 패널형], [직선바형], [입체문자형]으로 구분됨.
- 연속성 있는 가로경관 형성을 위해 단일 건물 내에서는 동일한 유형의 점두간판을 설치하며, 가급적 직선바형을 권장함.

일반 패널형

가이드라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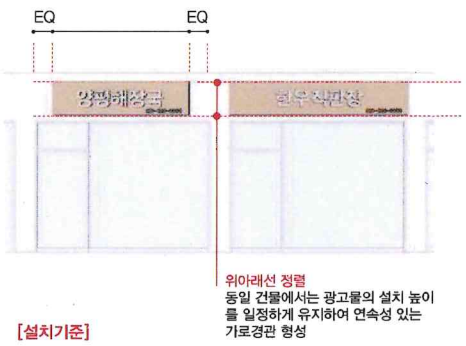
- 일반 패널형 점두간판은 배경패널 설치를 기본으로 하며, 광고내용을 입체문자 또는 평면 그래픽 쉬트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.
- 배경패널의 규격은 아래의 표준 디자인을 준수하여 계획하며, 비조명형으로 설치함.
- 배경패널의 색채는 무채색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적용하거나 외벽 마감과 조화되는 1가지의 저채도 색채를 선택하여 적용함. 단일 건물에서는 동일한 색채를 적용하여 통일감을 형성함.
- 점두간판은 점포 및 브랜드의 명칭 · 로고 · 심볼을 주 광고내용으로 구성하고, 점포에 따라 연락처(전화번호) 및 지점명을 선택하여 표기할 수 있음. 단, 실사이미지는 사용할 수 없음.
- 광고내용의 색채 및 서체는 자유롭게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, 조명 설치 시 주 광고내용에 한하여 조명형 입체문자 또는 블랙아웃(Blacks Out)쉬트를 사용함. 광고내용의 크기는 글자 높이를 기준으로 최대450mm 이내로 적용할 수 있음.
- 상업 · 업무용 건물의 경우 3층 이하에 위치한 각 점포별로 1개의 점두간판을 설치할 수 있음.
- 단일 건물 및 건물 간 이격 거리가 좁은 건물의 경우 광고물의 설치 높이 및 배경패널의 규격(높이) 등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연속성 있는 가로경관 형성을 유도함.

표준 디자인



[표준디자인] (scale: none, 단위: mm)

설치 이미지



[설치기준]



[설치 예시 이미지]

조명 패널형

가이드라인

- 조명 패널형 점두간판은 배경패널 상부에 조명이 매입되어 있는 형식으로서 광고내용은 입체문자 또는 평면 그래픽 쉬트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.
- 배경패널의 규격은 아래의 표준 디자인을 준수하며, 그 외 배경패널, 광고내용, 설치기준은 일반 패널형 점두간판과 동일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함. 단, 조명의 경우 배경패널 자체에 내장된 조명만을 허용함.

표준 디자인



설치 이미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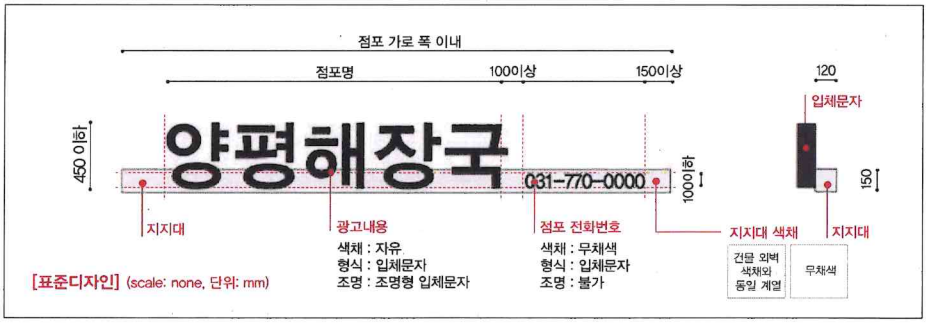


직선바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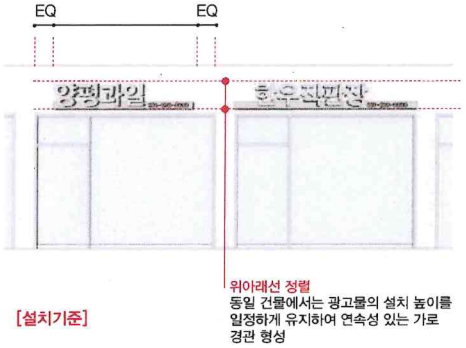
가이드라인

- 직선바형 점두간판은 가로형 지지대를 설치하고 입체문자를 부착함.
- 가로형 지지대의 규격은 아래의 표준 디자인을 준수하며, 그 외 광고내용, 설치기준은 일반 패널형 점두간판의 입체문자와 동일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함.

표준 디자인



설치 이미지



[설치기준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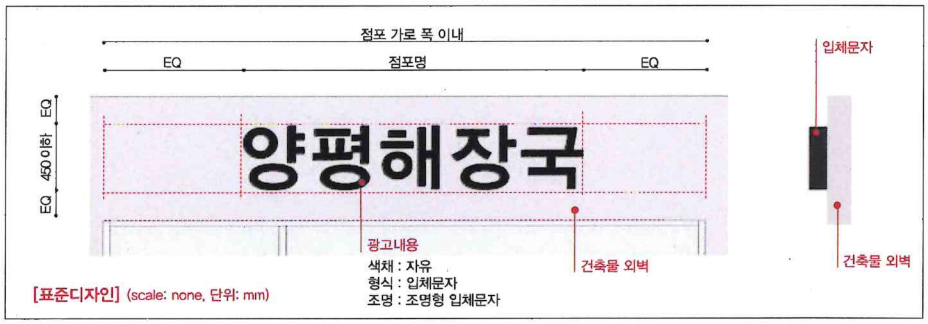
[설치 예시 이미지]

입체문자형

가이드라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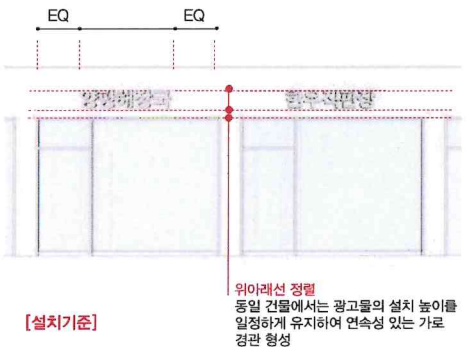
- 입체문자형 점두간판은 가로형 지지대를 설치하지 않고 건축물 외벽에 직접 입체문자를 부착함.
- 광고내용, 설치기준은 일반 패널형 점두간판의 입체문자와 동일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함.
- 점포전화번호는 설치하지 않음.

표준 디자인



[표준디자인] (scale: none, 단위: mm)

설치 이미지



[설치기준]



[설치 예시 이미지]

특이 사항

- 점두간판 설치 시 대로 이상 도로변 상업시설의 경우 양평군청 옥외광고물 감독부서의 승인을 거쳐 광고내용의 크기를 글자 높이 기준으로 최대 600mm까지 적용할 수 있음. (광고내용의 높이를 제외한 나머지 설치기준은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동일하게 적용함.)